

	학생성공처운영위원회규정	규정번호	3-8-37
		제정일자	2013.03.01.
		개정일자	2020.06.01.
		개정차수	4차
		소관부서	학생성공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.)의 학생성공처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.

1. 학생 지원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학생 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3. 학생 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
4. 기타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.

1. 위원장 : 학생성공처장
2. 당연직 위원 : 학생지원팀장
3. 위촉 위원 :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전임교원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7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8조(서기) 위원회는 위원 중 1인을 서기로 둔다.

제9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, 비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